

교원 특별채용 내규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교원 특별채용 내규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.) 교원인사 규정 제7조 제3항에 의거 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8.8.13>

제2조 (자격) 특별 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개정 2008.8.13>

1. 학문적 명성이 매우 높은 석학
2. 학문적 역량이나 연구 실적이 탁월한 학자
3. 국내외 학·연·산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분
4. 특정분야의 교육 및 연구에 상당한 경력을 쌓은 분

제3조 (계약임용절차 등) ① 특별채용 전공분야, 자격요건, 선발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채용되는 자가 소속될 대학원, 학부(과), 연구소 등의 장의 요청에 의거 교무처장이 교수충원계획(안)을 수립한다.

② 특별채용은 매 학기 초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계약임용(이하 임용이라 한다)한다. 단, 필요한 경우에 총장은 수시 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08.8.13>

③ 교원 특별채용 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8.13>

④ 심사는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08.8.13>

제4조 (계약체결) 특별채용교원의 직위와 보수, 임용기간 등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정한다.<개정 2008.8.13>

제5조 (신규임용 및 재임용) 특별채용 교원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계약에 의한다.<개정 2008.8.13>

제6조 (준용)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.<개정 2008.8.13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① (시행일) 이 내규의 시행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지침의 폐지) 이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‘교원 특별채용 지침’은 폐지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의 시행은 200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